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종목의 명칭 등

가. 보험종목의 명칭

무배당 알리안츠투자에강한변액연금보험 (최저연금적립금 미보증형) 1701

나. 연금지급형태

보험의 종류	연금지급형태		
적립형	종신 연금형	보증기간부 (개인계약, 부부계약)	정액형(10년 ~ 40년, 100세 보증) 체증형(10년 ~ 20년 보증) 소득보장형(10년 ~ 20년 보증)
		보증금액부	일반형
			자유형
	증신 연금형	보증기간부 (개인계약, 부부계약)	정액형(10년 ~ 40년, 100세 보증) 체증형(10년 ~ 20년 보증) 소득보장형(10년 ~ 20년 보증)
		보증금액부	일반형
			자유형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연금개시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가. 보험기간

보험기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적립형	계약일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거치형	계약일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종신연금형: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확정연금형: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최종 연금지급일까지 상속연금형: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실적배당연금형: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최종 연금지급일까지	

나.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연금개시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구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연금개시 나이(Y)	보험료 납입주기
적립형	10년~11년	5년납	만 15세 ~ (Y-연금개시전 보험기간)세	45세 ~ 80세	월납
	12년~14년	5년납, 7년납			
	15년	5년납, 7년납, 10년납			
	16년 이상	5년납, 7년납, 10년납, 11년~(연금개시전 보험기간-5)년납			
거치형	5년 이상	일시납			일시납

※ 주피보험자가 남자인 부부계약의 최저 연금개시나이는 48세임

※ 연금지급형태를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로 선택한 경우, 최대 연금개시나이는 “100세-보증지급기간+1” 세 임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이 없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기본보험료

(1) 적립형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매월 계속하여 납입하기로 약정한 보험료를 말하며, 기본보험료는 20만원 이상으로 한다.

(2) 거치형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납입한 일시납보험료를 말하며, 일시납보험료는 1,500만원 이상으로 한다.

나. 추가납입보험료

(1) 적립형

기본보험료 외에 보험료 납입한도에 따라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추가납입보험료는 월정기 추가납입보험료와 수시추가납입보험료로 구분된다.

- 1) 월정기 추가납입보험료 : 계약자가 매월 기본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에 기본보험료와 함께 정기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하며,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연금개시시점 전까지 납입할 수 있다.
 - 1회에 10만원 이상으로 납입되어야 한다.
 -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월정기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 변경 및 중지를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 계약자가 월정기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 및 변경, 중지를 신청한 경우 해당 내용은 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익월 납입기일부터 적용한다.
 - 해당 시점의 월정기 추가납입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차회 이후의 월정기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때 납입되지 않은 월정기 추가납입보험료를 청구하지 않는다.
- 2) 수시추가납입보험료 : 계약자가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연금개시 시점 전까지 수시로 납입하는 추가납입보험료를 말한다. 수시추가납입보험료는 해당월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납입 가능하다.
- 3)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
 - ① 계약자가 추가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의 총액(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와 수시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은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 납입총액의 2배 이내로 한다. 다만, 월정기 추가납입보험료와 수시추가납입보험료의 1회 최저납입금액은 10만원으로 한다.
 - ② 1회에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경과 기간별로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1회에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 \text{해당월까지의 납입할 기본보험료} \times 200\% - \text{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 ③ 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에 인

출금액의 누계를 더한 금액을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로 한다.

(2) 거치형

- 1) 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 외에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연금개시 전시점 전까지 보험료 납입한도에 따라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한다.
- 2)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는 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의 200%이내이며, 연간(보험년도 기준) 납입한도는 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의 20% 이내로 한다.
- 3) 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에 인출 금액의 누계를 더한 금액을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로 한다.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적립형에 한함)

주계약 기본보험료가 5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주계약 기본보험료를 할인한다.

할인조건	할인금액
주계약 기본보험료 50만원 초과 ~ 100만원 이하	주계약 기본보험료 50만원 초과금액의 2.0%
주계약 기본보험료 10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	주계약 기본보험료 100만원 초과금액의 2.5% + 10,000원
주계약 기본보험료 200만원 초과	주계약 기본보험료 200만원 초과금액의 3.0% + 35,000원

7. 보험료의 선납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8.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다음의 금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2)'의 경우 추가납입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 (1)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해지 된 경우
(적립형에 한함) :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에 「평균공시이율 + 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
- (2)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의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위험보험료, 기본보험료의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중 유지관련비용(납입후) 및 특약의 영업보험료(계약을 체결할 때 정한 보험료납입기간 이내에 한하며, 계약관리비용 중 기타비용 제외)를 충당할 수 없게 되어 해지 된 경우 :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위험보험료, 기본보험료의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중 유지관련비용(납입후) 및 특약의 영업보험료(계약을 체결할 때 정한 보험료납입기간 이내에 한하며, 계약관리비용 중 기타비용 제외)에 「평균공시이율 + 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과 추가납입보험료의 계약관리비용을 더한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추가납입보험료

나. ‘가’에서 ‘(1)’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와 ‘가’에서 ‘(2)’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위험보험료, 기본보험료의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중 유지관련비용(납입후) 및 특약의 영업보험료(계약을 체결할 때 정한 보험료납입기간 이내에 한하며, 계약관리비용 중 기타비용 제외)를 이하 ‘연체보험료’ 라 한다.

다. 회사는 ‘가’에 따라 승낙한 계약의 경우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부활(효력회복)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계약자적립금(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포함)과 다음의 금액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해지 시점의 편드별 편입비율에 따라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재투입하여 계약자적립금으로 한다.

- (1)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해지 된 경우
(적립형에 한함) : 연체보험료 중 특별계정투입보험료 해당액(위험보험료 및 부가보험료 제외)을 해당 보험료 납입일부터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
- (2)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위험보험료, 기본보험료의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중 유지관련비용(납입후) 및 특약의 영업보험료(계약을 체결할 때 정한 보험료납입기간 이내에 한하며, 계약관리

비용 중 기타비용 제외)를 충당할 수 없게 되어 해지 된 경우 : 추가납입보험료 중 특별계정투입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기본보험료의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중 유지관련비용(납입후) 및 특약의 영업보험료(계약을 체결할 때 정한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에 한하며, 계약관리비용 중 기타비용 제외)(연체이자 포함)를 차감한 금액

라. ‘나’ 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 (1) 부활(효력회복) 승낙 후 연체보험료(연체이자 포함)가 완납된 경우에는 「연체보험료 완납일 + 제3영업일」
- (2) 연체보험료 완납 후 제3영업일 이내에 부활(효력회복)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체보험료 완납일 + 제3영업일」
- (3) 연체보험료 완납 후 제3영업일이 지난 후에 부활(효력회복)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승낙일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적립형에 한함)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 1.0%」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이율로 적용한다.

10.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1) 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보험년도 기준 연12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다.

나.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10만원이상 만원 단위로 하며, 인출할 당시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한 금액)의 50%를 한도로 하고, 「신청일 +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출할 수 없다.

- (1) 적립형 :인출 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 (2) 거치형 : 인출 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이 기본보험료의 30% 미만의 금액인 경우

다. 회사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 이내에서 중도인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한다. 다만, 중도인출수수료는 연4회까지 면제된다.

라. ‘가’에도 불구하고,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는 총 인출금액(중도인출금액과 정기중도인출금액의 합계)이 계약자가 회사에 실제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인출 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14.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의 ‘나’에 따라 계산한다.

바. 중도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인출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한다.

(2) 정기중도인출서비스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월납형의 경우 기본보험료의 납입이 완료된 후부터, 일시납형의 경우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이하 ‘정기중도인출금액’이라 한다) 만큼 매월 자동적으로 중도 인출하여 지급 받을 수 있는 정기중도인출서비스를 회사에 신청할 수 있다.(이하 ‘정기중도인출서비스’라 한다.)

나. 계약자는 ‘정기중도인출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정기중도인출서비스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회사에서 제한할 수 있다.

다. 계약자는 ‘정기중도인출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정기중도인출금액’은 다음의 범위 이내에서 선택가능하며 매회 지급금액은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중도인출금액’은 10만원이상 만원 단위로 선택해야 한다.

① 적립형 : 납입한 보험료 총액의 0.1% ~ 3.0% 이내

② 거치형 : 납입한 보험료 총액의 0.1% ~ 0.5% 이내

라. 회사는 ‘정기중도인출금액’을 「신청일 + 제3영업일」 이후 도래하는 월 계약해당일을 최초 지급일로 하여, 매월 지급일에 지급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도래하는 영업일에 지급하며, 해당월의 지급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지급일로 한다.

- 마. ‘정기중도인출금액’은 인출할 당시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 바. ‘정기중도인출서비스’는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1)’의 ‘가’에서 정한 중도인출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사.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정기중도인출서비스’를 중지한다. 다만, ‘나’ 내지 ‘라’에 따라 ‘정기중도인출서비스’가 중지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서비스가 종료되었음을 계약자에게 안내한다.
- ① 계약자가 ‘정기중도인출서비스’의 중지를 신청한 경우
 - ② ‘정기중도인출금액’ 인출 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이 다음의 금액 미만인 경우
 - ㉠ 적립형 : 500만원 미만
 - ㉡ 거치형 : 기본보험료의 30% 미만
 - ③ ‘정기중도인출금액’이 인출할 당시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 ④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총 인출금액(중도인출금액과 정기중도인출금액의 합계)이 계약자가 회사에 실제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총액 이상인 경우
- 아. ‘정기중도인출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인출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 가.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을 기준으로 당월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한다.
- 나. 회사는 운용자산이익률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공시기준이율에 조정률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한다.

$$\text{공시기준이율} = \text{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times \alpha + \text{운용자산이익률} \times (1 - \alpha)$$

(1)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 ①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begin{aligned} &= \text{국고채(5년) 수익률} \times \text{국고채 가중치} (\beta 1) \\ &+ \text{회사채(무보증 3년, AA-)} \text{ 수익률} \times \text{회사채 가중치} (\beta 2) \\ &+ \text{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 \times \text{통화안정증권 가중치} (\beta 3) \\ &+ \text{양도성예금증서(91일) 유통수익률} \times \text{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 (\beta 4) \end{aligned}$$

- ② 외부지표 공시기관 등이 상기 외부지표금리가 더는 발생되지 않는 사유 등으로 다른 지표금리로 대체하여 공시하는 경우에는 그 대체된 지표금리를 사용할 수 있다.
- ③ 국고채(5년), 회사채(무보증 3년, AA-) 및 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과 양도성예금증서(91일) 유통수익률은 공시기준이율 적용시점의 전전월말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을 통해 산출한다.
- ④ 국고채 가중치($\beta 1$), 회사채 가중치($\beta 2$), 통화안정증권 가중치($\beta 3$), 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beta 4$)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여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text{국고채 가중치} (\beta 1) = \frac{a}{a+b+c+d}$$

$$\text{회사채 가중치} (\beta 2) = \frac{b}{a+b+c+d}$$

$$\text{통화안정증권 가중치} (\beta 3) = \frac{c}{a+b+c+d}$$

$$\text{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 (\beta 4) = \frac{d}{a+b+c+d}$$

- a는 회사가 보유한 국내 발행 국공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b는 회사가 보유한 회사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c는 회사가 보유한 통화안정증권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d는 회사가 보유한 양도성예금증서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한다.
-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0%이상 100%이하로 결정한다.

(2) 운용자산이익률

- ① 운용자산이익률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운용자산이익률} = \text{운용자산수익률} - \text{투자지출률}$$

- ② 운용자산수익률은 산출시점 직전 1년간의 자사의 투자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투자지출률에 사용되는 투자비용은 동 기간동안 투자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운용자산수익률(%)

$$= \frac{2 \times I}{\sum_{t=1}^{12} [\text{직전 } (t+1)\text{개월말 운용자산} + \text{직전 } (t)\text{개월말 운용자산}] / 12 - (I - E)} \times 100$$

투자지출률(%)

$$= \frac{2 \times E}{\sum_{t=1}^{12} [\text{직전 } (t+1)\text{개월말 운용자산} + \text{직전 } (t)\text{개월말 운용자산}] / 12 - (I - E)} \times 100$$

- I : 직전 1년간의 투자영업수익
- E : 직전 1년간의 투자영업비용

- ③ 운용자산은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은 운용자산관련 미실현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계산한다.

(3) 외부지표금리와 운용자산이익률의 가중치

- ① 가중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외부지표금리의 가중치} (\alpha) = \frac{A/B+C}{A+C}$$

$$\text{운용자산이익률의 가중치} (1-\alpha) = 1 - \frac{A/B+C}{A+C}$$

- A : 직전년도초 보험료적립금
- B :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
- C : 직전년도 수입보험료

- ②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한다.
- ③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결정한다.
- ④ 가중치는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60%를 초과할 수 없다.
- ⑤ 「직전년도초 보험료적립금」과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 「수입보험료」는 계정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⑥ 「수입보험료」는 원수보험료를 말한다.

- 다. 「가」의 공시이율은 동종 계정에 있는 동종상품[「가」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용되는 상품]의 배당보험 공시이율보다 높게 적용한다.
- 라.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용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한다.
- 마.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부터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복리 1.5%, 10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복리 0.5%를 적용한다.
- 바. 세부적인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운용지침」에 따른다.

12.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종신연금형 및 실적배당연금형의 경우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는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없다.
- 나. 보험계약대출금액은 「신청일 +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펀드별 편입비율에 따라 분배된 금액을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 후 보험계약대출이율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을 차감한 이율로 계산하여 보험계약대출적립금으로 적립한다.
- 다. 계약자는 「가」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계약대출적립금은 상환일부터 「상환일 + 제3영업일」까지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후 「상환일 +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하며, 보험계약대출적립금계정에서는 제외한다. 또한, 계약자가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다.
- 라. 적립형의 경우, 회사는 약관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다.

마.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13. 납입보험료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면, 회사는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를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이 계약의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를 산출하고, 이에 해당하는 이체금액을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나. ‘가’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및 ‘이체금액’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적립형의 제1회 보험료 또는 거치형의 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

-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 청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과 승낙 일 중 늦은 날
- 이체금액 : 특별계정투입보험료를 적립형의 경우 제1회 보험료 납입 후, 거치형의 경우 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 납입 후 청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까지는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계정의 펀드별 편입 비율로 가중 평균한 투자수익률을 적용 한 금액

(2) 적립형의 제2회 보험료

① 「월계약해당일 - 제3영업일」 이전에 납입한 경우

-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 「월계약해당일」과 제1회 보험료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중 늦은 날
- 이체금액 : 납입일부터 월계약해당일까지 기본보험료를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후 월계약해당일부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까지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

② 「월계약해당일 - 제2영업일」, 「월계약해당일 - 제1영업일」에 납입한 경우

-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 「납입일 + 제3영업일」과 제1회 보험료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중 늦은 날
- 이체금액 : 납입일부터 월계약해당일까지 기본보험료를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후 월계약해당

일부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까지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

③ 「월계약해당일」 이후에 납입한 경우

-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 「납입일 + 제3영업일」
- 이체금액 : 기본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후 납입일부터 「납입일 + 제3영업일」 까지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

(3) 적립형의 제3회 이후의 보험료

① 「월계약해당일 - 제3영업일」 이전에 납입한 경우

-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 「월계약해당일」
- 이체금액 : 납입일부터 월계약해당일까지 기본보험료를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

② 「월계약해당일 - 제2영업일」, 「월계약해당일 - 제1영업일」에 납입한 경우

-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 「납입일 + 제3영업일」
- 이체금액 : 납입일부터 월계약해당일까지 기본보험료를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후 월계약해당일부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까지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

③ 「월계약해당일」 이후에 납입한 경우

-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 「납입일 + 제3영업일」
- 이체금액 : 기본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후 납입일부터 「납입일 + 제3영업일」 까지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

(4) 추가납입보험료

-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 「납입일 + 제3영업일」
- 이체금액 :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일부터 「납입일 + 제3영업일」 까지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

14.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란 매월 납입한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하며,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한 경우에는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에서 총 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한 경우 ‘18. 최저사망보험금에 관한 사항’ 및 ‘21. 연금지급에 관한 사항’에서 정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 또는 인출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감액 직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ext{감액 직전 } \left[\text{이미 납입한 보험료} \right] \times \frac{\text{감액 직후 계약자적립금}}{\text{감액 직전 계약자적립금}}$$

인출 직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ext{인출 직전 } \left[\text{이미 납입한 보험료} \right]$$

$$\times \frac{\text{인출 직전 계약자적립금} - \text{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text{인출 직전 계약자적립금}}$$

정기중도인출 직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ext{정기중도인출 직전 } \left[\text{이미 납입한 보험료} \right]$$

$$\times \frac{\text{정기중도인출 직전 계약자적립금} - \text{정기중도인출금액}}{\text{정기중도인출 직전 계약자적립금}}$$

다. ‘나’의 ‘감액(또는 인출)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감액(또는 인출) 전에 감액 및 인출이 발생한 경우 ‘나’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한다.

15. 보험료 납입일시중지제도에 관한 사항 (적립형에 한함)

가.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부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에서 보험료 납입의 일시중지(이하 ‘납입일시중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의 납입이 중지된 기간(이하 ‘납입일시중지기간’이라 한다)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으며,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약에도 동일하게 납입일시중지가 적용된다. 다만, ‘계약유지보장’을 선택한 계약자는 납입일시중지기간에는 ‘계약유지보장’의 적용이 자동으로 중지되며, 납입일시중지기간 이후 ‘24. 계약유지보장에 관한 사항’ ‘다’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약유지보장’은 자동으로 재적용된다.

나. ‘가’의 경우 납입일시중지 이후의 해당 보험료 납입기일은 납입일시중지기간 만큼 연기되고, 그에 따라 보험료 납입기간은 납입일시중지기간 만큼 연장된다.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납입하지 않은 보험료 및 향후 보험료는 연기된 보험료 납입기일 및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다. 납입일시중지로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이 연금개시나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완료 이후 최초로 돌아오는 연 계약해당일로 연금개시나이가 연기된다. 다만, 납입일시중지로 인하여 특약의 보험기간은 연장되지 않으며, 특약의 보험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도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납입하지 않은 특약보험료는 주계약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한 특약보험료는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을 제외하고 주계약의 계약자적립금에 투입되어 적립된다. 또한 납입일시중지로 연금개시나이가 80세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납입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없다.

라. 회사는 납입일시중지기간 동안의 계약유지를 위해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은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할 때 공제한다.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 계약체결비용 + 계약관리비용 중 유지관련비용(납입 후)+ 특약 영업보험료(계약을 체결할 때 정한 보험료납입기간 이내에 한하며, 계약관리비용 중 기타비용 제외)

마. 납입일시중지기간은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라’에서 정한 금액의 공제가 가능한 기간 이내로 하고, 신청 1회당 12개월 (신청시점에 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 개월 수 포함)을 한도로 하며, 납입일시중지 신청 횟수는 3회를 한도로 한다. 다만,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라’에서 정한 금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납입일시중지기간은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 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하여야 한다.

바. 계약자는 납입일시중지기간 동안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계약자가 납입일시중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보험료 납입을 신청함으로써 보험

료를 납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입일시중지기간은 그 때부터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하여야 한다.

사. 회사는 납입일시중지기간 종료일 15일 이전에 계약자에게 납입일시중지기간의 종료(납입일시중지 신청으로 ‘라’에서 정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에서 더는 공제되지 못한다는 사실 등) 및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을 서면, 음성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안내하고, 계약자는 납입일시중지기간 종료 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까지 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하여야 한다.

아. 납입일시중지를 신청한 경우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는 자동으로 납입중단된다. 다만, 계약자는 납입일시중지기간 이후 보험기간 중 서면으로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을 재신청할 수 있다.

16. ‘잔여 보험료 납입 종료’에 관한 사항 (적립형에 한함)

가. 계약자는 보험계약일부터 보험료 납입기간의 50% 경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연 계약해당일 이후부터 계약자 또는 배우자가 ‘라’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잔여 보험료 전액의 납입 종료(이하 ‘잔여 보험료 납입 종료’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나. 계약자는 ‘잔여 보험료 납입 종료’를 신청한 시점부터 연금지급개시전일까지의 기간(이하 ‘잔여 보험료 납입 종료기간’이라 한다)동안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 할 수 없다.

다. ‘가’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잔여 보험료 납입 종료’를 신청할 수 없다.

1. ‘잔여 보험료 납입 종료’를 신청한 후 취소하거나 ‘잔여 보험료 납입 종료기간’이 종료된 경우
2.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납 미만인 경우
3. 보험료 납입기간의 50%가 경과하지 않은 경우
4.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

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라. ‘잔여 보험료 납입 종료’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퇴직: 퇴직증명서

(2)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또는 영위하는 사업장의 폐업: 폐업사실증명원

마. ‘가’ 내지 ‘라’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는 ‘잔여 보험료 납입 종료’를 신청한 후 3년 이내에 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잔여 보험료 납입 종료기간’은 그 때부터 종료된다. 이 경우 계약자는 ‘잔여 보험료 납입 종료’를 신청한 시점부터 신청 취소일까지의 기간 중 납입하지 않은 기본보험료 및 향후 보험료를 ‘사’에서 정한 연기된 보험료 납입기일 및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바. 회사는 ‘잔여 보험료 납입 종료기간’ 동안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차’에서 정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잔여 보험료 납입 종료기간’ 중 ‘차’에서 정한 금액의 공제가 불가능할 경우 ‘잔여 보험료 납입 종료기간’은 그 때부터 종료된다. 이 경우 계약자는 ‘잔여 보험료 납입 종료’를 신청한 시점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납입하지 않은 기본보험료 및 향후 보험료를 ‘사’에서 정한 연기된 보험료 납입기일 및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사. ‘마’ 또는 ‘바’에 따라 ‘잔여 보험료 납입 종료’가 신청취소 또는 종료된 이후의 최초 보험료 납입기일은 신청취소 또는 종료 후 최초로 다가오는 월계약해당일로 연기되며, 그에 따라 보험료 납입기간이 ‘잔여 보험료 납입 종료’를 신청한 시점부터 신청취소 또는 종료일까지의 기간만큼 연장된다.

아. ‘사’에 따라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의 종료시점이 연금지급개시나이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보험료 납입완료 이후 최초로 다가오는 연계약해당일로 연금지급개시나이가 연기된다.

자. 회사는 ‘잔여 보험료 납입 종료기간’ 중 ‘차’에서 정한 금액의 공제가 불가

능할 경우 종료일 15일 이전에 계약자에게 ‘잔여 보험료 납입 종료기간’의 종료[‘차’에서 정한 금액이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더 이상 공제되지 못한다는 사실 등] 및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 차. 회사는 ‘잔여 보험료 납입 종료기간’ 동안의 계약유지를 위해 ‘15.보험료 납입일시중지제도에 관한 사항 (적립형에 한함)’ ‘라’에서 정한 금액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공제한다.
- 카. ‘잔여 보험료 납입 종료’ 신청 이후에는 ‘차’에서 정한 금액을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공제하므로 해지환급금은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금액보다 적어질 수 있다.
- 타. 회사는 ‘차’ 및 ‘카’에 관한 내용을 상품안내자료에 기재하여 계약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7. 기본보험료 감액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는 기본보험료를 ‘5. 보험료에 관한 사항’에서 정하는 기본보험료 한도 내에서 회사의 승낙을 얻어 계약일 이후부터 감액할 수 있다. 다만, 종신연금형에 해당되는 부분은 감액할 수 없다.
- 나. 계약자의 기본보험료의 감액 신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승낙여부를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다. ‘가’의 경우 기본보험료의 감액에 따라 변경되는 월공제액 및 보험가입금액은 승낙일 이후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부터 적용한다.
- 라. 기본보험료 감액이 있을 경우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회사가 지급해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지급한다. 다만, ‘가’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할 때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을 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

보다 적어질 수 있다.

18. 최저사망보험금 및 최저연금적립금에 관한 사항

가. 최저사망보험금

회사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동안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사망보험금으로 보증한다. 최저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해 위험보험료가 보험기간 중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며, 이로써 특별계정 투입금액 및 계약자적립금 등이 감소할 수 있다.

나. 최저연금적립금

해당사항 없음

19.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가. 특별계정의 운용 및 평가

- (1) 변액보험의 특별계정별로 운용되는 자산(이하 “펀드”라 한다)은 일반보험의 자산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되며, 펀드운용실적이 매일 평가되어 계약자적립금에 즉시 반영된다.
- (2) 회사는 이 계약의 운용자산을 회사가 운영하는 다른 변액보험의 유사한 성격의 운용자산별로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펀드 통합사유, 통합일자, 기타 펀드통합관련사항을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동법 제2조 제1호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 공고하거나 계약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펀드를 통합한 날 이후 6개월이 지난 날까지 각 펀드의 결산서류를 회사 본점에 비치한다.
- (3) 특별계정 운용보수(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및 사무관리보수를 합한 보수를 말하며, 이하 같다)는 특별계정과 분리하여 관리한다.
- (4)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인하할 경우 그 시점에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도 변경일부터 변경된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적용한다.

나. 펀드의 유형

(1) 펀드의 유형은 다음 각 호로 한다.

- ① **안정형**: 양도성예금증서(CD), 1년만기 국공채, 특수채 기타 제예금 등 단기유동성 금융자산에 순자산(NAV)의 90% 이내를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에 투자한다. 다만, 무배당 알리안츠변액유니버셜보험의 “안정형(설정일 2004년 10월 4일)”으로 한다.
- ② **채권형**: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 포함)을 포함한다] 및 채권형펀드 그리고 이와 관련된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95%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에 투자한다. 다만, 무배당 알리안츠브릭스변액유니버셜보험의 “채권형(설정일 2008년 7월 21일)”으로 한다.
- ③ **주식혼합형**: 주식(코스닥주식,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증권이나 증서 등 포함) 및 주식형펀드, 상장지수펀드, 그리고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을 순자산(NAV)의 6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국내 채권, 채권형펀드, 채권관련 파생상품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해 유동성 자산에 투자한다. 다만, 무배당 알리안츠글로벌어린이변액유니버셜보험의 “주식혼합형(설정일 2007년 11월 20일)”으로 한다.
- ④ **성장형**: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 포함)을 포함한다],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10% 이내로 투자하고, 주식(코스닥 주식 등 포함)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90% 이내에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에 투자한다. 다만, 무배당 알리안츠큰사랑변액유니버셜보험의 “성장형(설정일 2005년 7월 5일)”으로 한다.
- ⑤ **Ko-BRICs주식형**: KOSPI200 인덱스와 BRICs 지역(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에 투자하는 주식(코스닥 주식 등 포함) 및 주식형 펀드, 상장지수펀드, 그리고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7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국내 채권, 채권형펀드, 채권관련 파생상품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한다. 다만, 무배당 알리안츠브릭스변액유니버셜보험의 “Ko-BRICs주식

형(설정일 2008년 7월 21일)”으로 한다.

- ⑥ **BRICs주식형**: BRICs 지역(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에 투자하는 주식 및 주식형 펀드, 상장지수펀드, 그리고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7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국내 채권, 채권형 펀드, 채권관련 파생상품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한다. 다만, 무배당 알리안츠브릭스변액유니버셜보험의 “BRICs주식형(설정일 2008년 7월 21일)”으로 한다.
- ⑦ **Index혼합형**: KOSPI 200 인덱스를 추종하는 주식(코스닥 주식 등 포함) 및 주식형펀드, 상장지수펀드, 그리고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을 순자산(NAV)의 6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국내 채권, 채권형펀드, 채권관련 파생상품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한다. 다만, 무배당 알리안츠브릭스변액유니버셜보험의 “Index혼합형(설정일 2008년 7월 21일)”으로 한다.
- ⑧ **글로벌리츠형**: 미국, 호주, 일본 등 해외 리츠에 순자산(NAV)의 70% 이내에서 투자하고, 국내 채권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20% 이내에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에 투자한다. 다만, 무배당 알리안츠변액유니버셜보험의 “글로벌리츠형(설정일 2006년 4월 24일)”으로 한다.
- ⑨ **혼합간접형**: 국내외 채권 및 채권형 펀드에 순자산(NAV)의 70% 이내에서 투자하고, 해외 주식형펀드에 순자산의 30% 이내에서 투자한다.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한다. 다만, 무배당 알리안츠변액유니버셜보험의 “혼합간접형(설정일 2005년 6월 20일)”으로 한다.
- ⑩ **글로벌이머징마켓혼합재간접형**: 전 세계 이머징 마켓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50%까지 편입하고, 국내 채권 펀드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40% 이내에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유동자산 및 수익증권에 투자한다. 다만, 무배당 알리안츠글로벌변액유니버셜보험의 “글로벌이머징마켓혼합재간접형(설정일 2007년 08월 21일)”으로 한다.
- ⑪ **글로벌셀렉트재간접형**: 전 세계 대표적인 성장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90% 까지 편입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유동자산 및 수익증권에 투자한다. 다만, 무배당 알리안츠글로벌변액유니버셜보험의 “글로벌셀렉트재간접형(설정일 2007년 08월 21일)”으로 한다.
- ⑫ **토탈리턴글로벌채권재간접형**: 국내외 채권형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

투자증권 그리고 채권 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10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한다. 다만, 무배당 알리안츠파워리턴변액유니버설보험의 “토탈리턴글로벌채권재간접형(설정일 2010년 07월 29일)”으로 한다.

- ⑬ **이머징마켓채권재간접형**: 국내외 채권형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그리고 채권 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10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한다. 다만, 무배당 알리안츠파워리턴변액유니버설보험의 “이머징마켓채권재간접형(설정일 2010년 07월 29일)”으로 한다.
- ⑭ **글로벌인덱스리스크컨트롤틀형**: 국내외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 주식형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등에 순자산(NAV)의 90%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한다. 글로벌인덱스 수익률의 변동성에 따라 펀드 내 글로벌인덱스를 추종하는 기초자산의 투자비율을 주기적으로 조절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글로벌인덱스는 KOSPI200Index, S&P500Index, HSCEI로 구성되며, 위험자산의 변동성 수준에 따라 위험자산의 투자비율은 0%이상 100% 이내로 하고, 나머지는 채권 또는 유동성 자산에 투자한다. 다만, 무배당 알리안츠파워밸런스변액연금보험의 “글로벌인덱스 리스크컨트롤틀형(설정일 2012년 04월 20일)”으로 한다.
- ⑮ **K200리스크컨트롤틀형** : KOSPI200 관련 주식, 상장집합투자증권 (ETF), 지수선물 등에 순자산(NAV)의 100%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국내 채권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한다. KOSPI200 인덱스 수익률의 변동성에 따라 주기적으로 펀드 내 주식 투자비율을 최소 0%에서 최대 100%까지 조절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 ⑯ **글로벌다이나믹멀티에셋형** : 전세계 다양한 자산군 (주식, 채권, 원자재, 단기자산 등)에 투자하는 국·내외 상장집합투자증권 (ETF) 또는 지수선물 등에 순자산(NAV)의 100%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한다. 주기적으로 펀드 내 편입 자산을 선별/교체하며, 사전에 정해진 펀드의 목표 변동성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선별된 투자 자산을 배분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 ⑰ **밸류고배당주식재간접형** : 국내 주식,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증

권 그리고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10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한다. 다만, 주식 투자에 있어 고배당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배당수익을 도모한다.

- ⑯ **중소형Best주식재간접형** : 국내 주식,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그리고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10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한다. 다만, 주식 투자에 있어 중소형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추가적인 자본이득을 도모한다.
- ⑰ **글로벌배당인컴주식재간접형** : 글로벌 시장 내 주식,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그리고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10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한다. 다만, 해외 주식 투자에 있어 고배당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배당수익을 도모한다.
- ⑲ **인컴앤파로스재간접형** : 글로벌 시장 내 미국을 중심으로 하이일드 채권, 전환사채, 주식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등에 순자산(NAV)의 10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한다.
- ㉑ **유럽배당주식재간접형**: 유럽 지역 관련 주식,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그리고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10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한다. 다만, 유로 지역 주식 투자에 있어 배당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배당수익을 도모한다.
- ㉒ **차이나포커스재간접형**: 중국, 홍콩 지역 관련 주식,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그리고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10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한다.
- ㉓ **인디아포커스재간접형**: 인도 지역 관련 주식,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그리고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10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한다.
- ㉔ **단기국공채재간접형** : 국내 채권 혹은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그리고 채권 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10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한다. 채권 투자에 있어 단기 국공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㉕ **베스트국공채재간접형** : 국내 채권 혹은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그리고 채권 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10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한다. 채권 투자에 있어 국공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㉖ **글로벌다이나믹채권재간접형** : 전세계 채권 혹은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그리고 채권 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10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한다. 채권의 자산배분 전략을 사용하여 투자한다.

㉗ **고배당포커스30채권혼합재간접형** : 국내 주식 및 국내 채권 혹은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10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한다. 주식 투자에 있어 순자산의 30% 이하로 고배당주 중심으로 투자를 한다.

㉘ **네비게이터주식재간접형** : 국내 주식 혹은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그리고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10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한다.

- (2) ‘(1)’의 투자대상은 보험업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운용되며 그 관계법령이 제·개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동될 수 있다.
- (3) ‘(1)’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새로운 펀드를 추가할 수 있다.
- (4) 운용자산인 유가증권 등의 가격변동 및 해지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1)’에서 정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가격변동 등의 사유인 경우 3개월 이내, 해지 등의 사유인 경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특별계정 운용보수에 관한 사항

- (1) 펀드 종류별 운영보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	운영보수
안정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191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05232877%)

채권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351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09616438%)
성장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5955%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16315068%)
글로벌 셀렉트 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4205%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11520548%)
글로벌 이머징마켓 혼합 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4205%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11520548%)
주식혼합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361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09890411%)
Ko-BRICs 주식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451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12356164%)
BRICs 주식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451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12356164%)
Index 혼합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451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12356164%)
혼합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5305%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14534247%)
글로벌리츠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2805%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07684932%)
토탈리턴 글로벌채권 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3205%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08780822%)
이머징마켓 채권 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3205%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08780822%)
글로벌인덱스 리스크컨트롤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4305%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11794521%)
K200리스크컨트롤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53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14520548%)
글로벌다이나믹멀티에셋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435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11917808%)
밸류 고배당 주식 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43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11780822%)
중소형 Best 주식 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43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11780822%)
글로벌 배당 인컴 주식 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45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12328767%)
인컴 앤 그로스 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45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12328767%)
유럽 배당주식 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45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12328767%)
차이나 포커스 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45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12328767%)
인디아 포커스 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45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12328767%)

단기국공채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351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09616438%)
베스트국공채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351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09616438%)
글로벌다이나믹채권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41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11232877%)
고배당포커스30채권혼합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36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09863014%)
네비게이터주식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43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11780822%)

(2) 펀드 종류별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및 사무관리보수는 실제로 사용된 비용으로 하며, 다음을 한도로 한다.

구분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
안정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7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01917808%)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1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00273973%)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195%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00534247%)
채권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1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00273973%)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15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00410959%)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195%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00534247%)
성장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16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04383562%)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15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00410959%)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195%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00534247%)
글로벌 셀렉트 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1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00273973%)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15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00410959%)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195%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00534247%)
글로벌 이머징마켓 혼합 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1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00273973%)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15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00410959%)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195%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00534247%)
주식혼합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10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02739726%)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15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00410959%)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195%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00534247%)
Ko-BRICs 주식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100% (매일 특별계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150% (매일 특별계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195%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00273973%)	계약자적립금의 0.0000410959%)	계약자적립금의 0.0000534247%)
BRICs 주식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1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00273973%)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15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00410959%)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195%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00534247%)
Index 혼합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1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00273973%)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15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00410959%)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195%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00534247%)
혼합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10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02739726%)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3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00821918%)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195%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00534247%)
글로벌리츠 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55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15068493%)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3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00821918%)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195%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00534247%)
토탈리턴 글로벌채권 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8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02191781%)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3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00821918%)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195%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00534247%)
이머징마켓 채권 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8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02191781%)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3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00821918%)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195%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00534247%)
글로벌 인덱스 리스크 컨트롤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20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05479452%)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3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00821918%)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195%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00534247%)
K200리스 크컨트롤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12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03287671%)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15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00410959%)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15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00410959%)
글로벌다이 나믹멀티에 셋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20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05479452%)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3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00821918%)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15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00410959%)
밸류 고배당 주식 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1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00273973%)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15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00410959%)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15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00410959%)

	0.0000273973%)	0.0000410959%)	0.0000410959%)
네비게이터 주식재간접 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1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00273973%)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15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00410959%)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15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00410959%)

- (3) ‘(2)’에서 정한 투자일임보수 및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의 경우, 실제 지급한 보수가 많아질 경우에는 회사는 운영보수에서 그 초과분을 총당한다.
- (4) 특별계정이 다른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1)’ 및 ‘(2)’에서 정한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및 사무관리보수 이외에 해당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투자함으로써 별도의 수수료(판매보수 포함)가 추가적으로 부과된다는 사실 및 그 추가 수수료에 대해 안내자료 등에 기재한다.

라. 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 (1) 계약자는 계약 체결을 할 때 ‘나’에서 정한 펀드 중 1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복수로 선택한 경우에는 펀드별로 기본보험료의 투입비율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각 펀드별 기본보험료는 5만원 이상으로 한다. 계약자는 보험년도 중 연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회사에 서면으로 기본보험료 투입비율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2) 추가납입보험료 중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는 기본보험료의 투입비율에 따라 해당펀드에 투입되며, 수시추가납입보험료는 계약자의 지정이 있을 경우 그 지정한 비율에 따라 해당펀드로 투입되고, 지정이 없을 경우에는 기본보험료의 투입비율에 따라 해당펀드에 투입된다. 다만, 각 펀드별 추가납입보험료는 5만원 이상으로 한다.
- (3) ‘(2)’에도 불구하고 ‘계약유지보장’을 선택한 계약자는 ‘계약유지보장’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때 ‘나’의 안정형 펀드와 채권형 펀드의 투입비율을 합산하여 60%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 (4)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보험년도 중 연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회사에 서면으로 펀드적립금의 이전 또는 펀드의 자동재배분에 따른 펀드의 편입비율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최초 펀드설정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펀드설정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부터 가능하다.
- (5) ‘(4)’에도 불구하고 계약유지보장이 종료되지 않은 계약자는 ‘나’의 안

정형 펀드와 채권형 펀드의 편입비율의 합이 60%미만이 되도록 펀드적립금을 다른 펀드로 이전할 수 없다. 다만, 펀드적립금을 이전 하더라도 ‘나’의 안정형 펀드와 채권형 펀드의 이전 후 적립금의 합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 보험료 제외)의 60%이상이어야 한다.

- (6) ‘(1)’ 내지 ‘(4)’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체결된 이후 ‘나’의 ‘(3)’에 따라 새로운 펀드가 설정되는 경우 계약자는 추가로 설정된 펀드를 선택하거나 추가로 설정된 펀드로 펀드적립금을 이전할 수 있다.
- (7) 회사는 ‘(4)’에 따른 펀드적립금의 이전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요구일 + 제5영업일」의 기준 가격을 적용하여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을 따른다. 다만, 이전하는 펀드적립금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이전 가능하다.
- (8) 회사는 ‘(4)’에서 정한 요구를 접수한 때에는 계약자에게 변경대상 계약자 적립금의 0.1%와 2,000원 중 적은 금액으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7)’의 현금이전을 할 때 공제한다. 다만, 펀드 변경을 할 때 수수료는 연 4회까지 면제 된다.
- (9) 회사는 천재·지변, 유가증권시장의 폐쇄·휴장, 유가증권 등의 매각지연,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에서 정하는 날까지 펀드적립금을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자체 없이 그 사유 및 향후 이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향후 펀드적립금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보험재산이 처분되는 날부터 제5영업일을 기준으로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을 따른다.

마. 펀드자동재배분

- (1)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일부터 펀드자동재배분 주기(3개월, 6개월 중 계약자가 선택한 주기) 단위로 계약을 체결할 때 선택한 펀드의 편입비율로 자동재배분된다. 다만, 펀드자동재배분 실행일이 영업일이 아니면 다음 영업일에 실행된다.
- (2) 보험기간 중 펀드 변경에 따라 펀드의 편입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펀드의 편입비율에 따라 자동재배분되며, 이 경우에도 계약일부터 펀드자동재배분 주기(3개월, 6개월 중 계약자가 선택한 주기) 단위로 자동재배분된다.

- (3) '(1)' 및 '(2)' 에도 불구하고 '계약유지보장'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나'의 안정형 펀드와 채권형 펀드의 편입비율의 합을 60%미만으로 설정할 수 없다. 또한, '나'의 안정형 펀드와 채권형 펀드의 펀드자동재배분 후 적립금의 합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의 60%미만인 경우 해당 펀드자동재배분 실행일에는 펀드자동재배분을 할 수 없다.
- (4)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5)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한 경우에는 채권형펀드자동전환옵션을 선택할 수 없으며, 펀드자동재배분을 취소한 경우에 한하여 채권형펀드자동전환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바. 채권형펀드자동전환옵션

- (1)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채권형펀드자동전환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계정적립금이 계약자가 정한 목표수익률을 달성할 때 채권형 펀드를 제외한 펀드의 적립금 전액을 채권형 펀드로 자동이전 한다.
- (2) 계약자는 최초로 채권형펀드자동전환옵션 선택시 110%에서 200% 범위내에서 10% 단위로 목표수익률을 선택할 수 있다.
- (3) 목표수익률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 대비 특별계정 적립금의 비율을 말한다.
- (4) 회사는 채권형펀드자동전환옵션 실행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채권형으로 자동이전되었음을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한다.
- (5) 목표수익률 도달시 채권형펀드자동전환옵션은 해제되며, 이후 채권형펀드자동전환옵션을 재신청시 선택할 수 있는 목표수익률은 직전 선택하였던 목표수익률 이상을 10%단위로 재신청해야 한다.
- (예 : 직전 달성하였던 목표수익률이 120%인 경우, 재신청시 130%이상 선택가능)
- (6)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채권형펀드자동전환옵션을 매년 4회 이내의 범위에서 선택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7) 채권형펀드자동전환옵션을 선택한 경우에는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채권형펀드자동전환옵션을 취소한 경우에 한하여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할 수 있다.
- (8) 채권형펀드자동전환옵션 실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실행되

며, 펀드자동이전시 채권형펀드자동전환옵션 실행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이체한다.

(9) ‘라. 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의 ‘(4)’에 따른 펀드적립금의 이전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전요청일부터 펀드적립금의 이전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채권형펀드자동전환옵션은 실행되지 않는다.

사. 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 특별계정자산의 평가 및 운용은 보험업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며, 그 관계법령이 제·개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경될 수 있다.

(2) ‘(1)’에 따른 특별계정자산의 평가는 각 특별계정별로 적용한다.

아.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에 관한 사항

특별계정의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좌수

특별계정을 설정할 때 1원을 1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특별계정에 이체 또는 인출한다.

(2) 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되,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며 최초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한다.

$$\text{좌당 기준가격} = \frac{\text{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text{특별계정의 총 좌수}}$$

※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라 함은 당일 특별계정의 총자산에서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자. 초기투자자금

(1) 회사는 특별계정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자금을 이체하여 특별계정을 설정할 수 있다.

(2) ‘(1)’에 정한 초기투자자금의 운용은 특별계정별로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① 초기투자자금의 규모는 일반계정 총자산의 1%와 100억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 ② ‘①’의 규정에 따른 특별계정 자산이 분기말 기준으로 초기 투자자금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기투자자금을 특별계정의 기준가격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일반계정으로 상환한다.
- ③ ‘①’ 및 ‘②’의 규정에 따른 초기투자자금의 이체 또는 상환은 현금으로 한다.

자. 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에 따른 보수, 그 밖의 수수료와 동법 시행령 제265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에 따른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비용 및 유가증권 매매수수료 등을 특별계정 자산에서 인출하여 부담한다. 다만,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카. 계약자 공지에 관한 사항

(1)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 발생 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계약자에게 공지한다.

- ①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④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 ⑤ ‘계약유지보장’의 적용이 중지되거나 재적용된 경우

(2)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를 계약자에게 매 3개월마다 제공한다.

타. 특별계정의 폐지

-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특별계정을 폐지할 수 있다.
 - ① 해당 각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효율적인 자산 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 ②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③ 해당 각 특별계정의 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

④ ‘①’ 내지 ‘③’에 준하는 경우

(2) 회사는 ‘(1)’에서 정한 사유로 각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폐지사유, 폐지일까지의 계약자적립금과 함께 펀드 변경 선택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계약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다만,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다.

(3) 회사는 ‘(1)’ 및 ‘(2)’에서 정한 사유로 계약자가 펀드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펀드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계약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연간 펀드의 변경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20. 계약자적립금의 계산

이 보험의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계약자적립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1. 연금지급에 관한 사항

가. 연금액 계산할 때 적용이율에 관한 사항

이 보험의 연금액 계산을 할 때에는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실적배당연금형의 경우 연금액 및 연금개시 후 계약자적립금 계산시 적립이율은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을 적용한다.

나. 실적배당연금형에 관한 사항

(1) 연금개시 이후에도 특별계정의 자산운용실적에 의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서 매회 지급되는 연금액은 특별계정 운용실적에 따라 매회 변동된다.

(2) 연금지급주기는 매년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1개월 단위, 3개월 단위 또는 6개월 단위로 할 수 있다.

(3) ‘(1)’에서 ‘매회 지급되는 연금액’은 계약자가 선택한 실적배당연금지급 기간(5년 이상 연단위로 한다)동안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의 보유좌수를 실적배당

연금지급기간×지급주기로 균등분할하여 연금으로 지급한다.

(4) 계약자(연금개시 이후에는 보험수익자)는 「(2)」의 실적배당연금지급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3)」의 연금지급주기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경신청 이후 최초의 연계약해당일로부터 적용한다. 또한 신청은 연 1회 가능하며 「변경요구일 + 제5영업일」에 변경사항이 적용된다.

(5) 「(4)」에서 실적배당연금지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일 현재 실적 배당연금형의 계약자적립금이 120만원 이상이고, 실적배당연금지급기간 만료일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6) 매회 연금지급일을 연금지급 이체사유발생일로 하여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하여 보험수익자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7) 최초 연금개시일 전일까지 보험계약대출적립금 잔액이 있는 계약자는 실적배당연금형을 선택할 수 없으며 이미 선택한 경우에는 다른 연금지급형태로 변경하여야 한다.

22.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이체

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에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1) 보험료 등의 납입이 있는 경우

다만,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납입후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 제외)를 제외한 금액, 이하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라 한다]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25. 기타’의 ‘가’에 따라 이체한다.

(2)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이 있는 경우

(3)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에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다.

(1) 사망보험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2) 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

(3) 보험계약대출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 (4) 계약이 소멸 또는 해지된 경우
- (5) 월공제액을 충당하는 경우(다만, 월공제액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 (6)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이 종료된 경우 (다만, 실적배당연금형은 제외)
연금개시일에 해당 계약의 계약자적립금을 일반계정으로 이체한다.
- (7)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 (8) ‘실적배당연금형’에서 연금액 지급이 있는 경우

다.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의 이체에 따른 손익처리

- (1)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의 이체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5영업일 이내에 하며 이체금액은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
- (2) ‘(1)’에 따라 자금이체를 할 때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실제 이체하는 날까지 실적을 적용함으로 발생한 손익은 일반계정 주주지분에서 처리한다.

23. 보증준비금에 관한 사항

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보증준비금을 평가한다.

24. 계약유지보장에 관한 사항

가. 가입시점에 ‘계약유지보장’을 선택한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가 적립형의 경우 해당 경과 월까지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 총액, 거치형의 경우 기본보험료 총액(이하 ‘계약유지보장 기준보험료’라 한다) 이상인 경우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충당할 수 없더라도 계약의 효력이 지속된다. 이를 ‘계약유지보장’이라 한다.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 계약체결비용 + 계약관리비용 중 유지관련비용(납입후)+ 특약 영업보험료(계약을 체결할 때 정한 보험료납입기간 이내에 한하며, 계약관리비용 중 기타비용 제외)

나. ‘계약유지보장’은 가입시점에 한하여 선택 가능하며, 보험기간 중에는 선택할

수 없다. ‘계약유지보장’을 선택한 계약자는 ‘19.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나. 펀드의 유형’의 안정형 펀드와 채권형 펀드의 투입비율을 더하여 항상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60%이상으로 항상 유지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의 미납 또는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등으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가 ‘계약유지보장 기준보험료’ 미만이 될 경우 ‘계약유지보장’이 자동으로 중지된다.

다. ‘계약유지보장’이 중지되더라도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유지보장’은 자동으로 재적용된다.

- (1) 해당 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가 ‘계약유지보장 기준보험료’ 이상의 금액인 경우
- (2) ‘계약유지보장’이 중지된 상태에서도 ‘19.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나. 펀드의 유형’의 안정형 펀드와 채권형 펀드의 투입비율을 더하여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60%이상으로 유지한 경우
- (3) 펀드적립금을 이전하는 경우 ‘계약유지보장’이 중지된 상태에서도 ‘19.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나. 펀드의 유형’의 안정형 펀드와 채권형 펀드의 편입비율을 60%이상으로 유지한 경우

라. 계약자는 가입 이후 언제든지 서면으로 ‘계약유지보장’의 종료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유지보장’이 종료된 이후 ‘계약유지보장’의 재신청은 할 수 없다.

마. 회사는 ‘계약유지보장’이 중지되거나 재적용될 경우 계약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25. 기타

가. 이 보험의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계약자적립금 및 이 보험에 부가되는 선택특약은 일반계정에서 운용한다.

나. 보험계약의 변동사항 통지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체결 이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동안 분기별로 보험계약의 변동내용을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실적배당연금형을 선택한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동안 분기별로 보험계약의 변동내용을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계약자적립금 변동에 관한 사항
- (2) 납입보험료 누계 및 해지할 때의 해지환급금

다. 결산사항의 통지

회사는 사업년도가 종료될 때 특별계정의 결산사항을 감독원에 보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특별계정 총좌수
- (2) 특별계정 기준가격
- (3) 특별계정 자산총액
- (4) 특별계정 자산운용 연평균 수익률
- (5) 특별계정 자산구성내역 및 비율
- (6) 특별계정 자산구성비율 변동내역
- (7) 특별계정 운용보수

라. 보험가입금액

- (1) 적립형: 기본보험료 \times 12 \times Min{납입기간, 10}
- (2) 거치형: 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

마.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전에 연금생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연액 또는 연금월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연금생명표 및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연액 또는 연금월액을 지급하며, 이 경우 회사는 연금개시 3개월전까지 연금액 변동내역 및 연금지급형태 선택방법 등을 안내한다.

바. 무배당 자유로연금전환특약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 (1) 회사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생존할 때 ‘①’ 내지 ‘③’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계약에 한하여, 무배당 자유로연금전환특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무배당 자유로연금전환특약으로의 전환 이후 다시 이 계약으로 변경은 할 수 없다.

- ① 적립형 : 납입기간이 지난 계약 (다만,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계약일부터 10년 이상 지난 계약)

거치형 : 계약일부터 5년 이상 지난 계약

② 전환신청일 기준으로 해지환급금(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한 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이상인 계약

③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는 계약

(2) 무배당 자유로연금전환특약의 보험료는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계산되며, 종신연금형 연금액은 전환전계약의 가입시점의 피보험자 나이와 전환후 연금개시나이에 따라 계산한다.

(3) 무배당 자유로연금전환특약은 전환전계약의 가입시점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및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4) 다만, 무배당 자유로연금전환특약의 종신연금형의 경우 '(3)'에도 불구하고 연금생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전환시점의 연금사망률에 의해 계산된 연금액」이 「전환전계약의 가입시점 연금사망률에 따라 계산된 연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전환시점의 연금사망률에 의해 계산된 연금액」을 지급한다.

(5) 전환일시금은 「전환신청일 +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한 전환전 계약의 해지환급금으로 하며, 전환시점은 「전환신청일 + 제3영업일」로 한다.

사.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다.

아.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제도 비교 설명

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제도와 추가납입보험료의 사업비 등을 비교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자. 보험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